

수원지방법원 2020. 11. 11 선고 2020나64422 판결 [부속물매수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,항소인 A

피고,피항소인 B

변론 종결 2020. 9. 23

판결선 고 2020. 11. 11

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. 3. 20. 선고 2019가단15686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132,27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.

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원근판사 강정연판사 김회근